

식품 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2019년 8월 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5호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의 규범화, 식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 대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 실시한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와 위험 모니터링 샘플링 검사 작업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적인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조직하며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조직 실시할 때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해당 등급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과학성, 공개성, 공정성, 공정성 원칙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 발견과 조사를 취지로 법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경영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해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실시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안전의 최우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 실시하는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 기관(이하 '검사 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자격 인증을 취득한 후 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이 검사를 할 때, 과학과 직업 도덕을 준수하고 검사 데이터와 결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검사 기관의 샘플링 검사 작업에 대해 감독 조사하

고 검사 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6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 안전 위험 경고를 강화하며 관련 감독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구현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규정에 따라 국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종합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지도 규범을 조직하고 제정한다.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지도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제8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작업 수요에 따라 전국적인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제정한 샘플링 검사 연간 계획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해당 행정 구역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작업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계획과 작업 방안은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샘플링 검사할 식품 품종
- (2) 샘플링 단계, 샘플링 방법, 샘플링 수량 등 샘플링 작업 요구 조건
- (3)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단 근거 등 검사 작업 요구 조건
- (4) 샘플링 결과 및 종합 분석의 보고 방식과 시한
- (5) 법률, 법규, 정관 및 식품 안전 표준에 규정된 기타 내용

제10조 하기 식품을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작업 계획의 중점 대상으로 정한다.

- (1) 위험 정도가 높고 오염이 상승하는 식품
- (2) 유통 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많으며 소비자 불만 신고가 많은 식품
- (3) 위험 모니터링, 감독 검사, 특별 단속, 사건 검열, 사고 조사, 긴급 처리 등 위험 요소가 많음이 분명한 식품
- (4) 영유아와 기타 특정인 전용 보조 식품
- (5) 학교와 유치원 식당 및 관광지 외식 서비스 기관, 급식실, 단체 식사 배송 기관이 경영하는 식품
- (6) 관련 부처가 공개한 비식용 물질 불법 첨가가 의심되는 식품
- (7) 해외에서 이미 건강에 유해하였고 중국 내에서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식품
- (8) 기타 샘플링 검사 작업 중점으로 간주된 식품

제3장 샘플링

제11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자체적으로 샘플링하거나 혹은 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 안전 샘플링 작업은 샘플링 대상 임의 추출, 샘플링 인원 임의 확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縣)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 안전 샘플링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는 샘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샘플링 기관은 식품 샘플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직책, 샘플링 절차, 작업 규율을 명확하게 정하며 샘플링 작업자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샘플링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샘플링 작업자는 식품 안전 법률, 법규, 정관, 식품 안전 표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샘플링 작업자가 현장 샘플링 임무 수행 시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샘플링 검사를 받는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샘플링 검사 고지서 및 신분 증명 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 기관은 샘플링 업무 수행 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 검열, 사고 조사 중인 식품의 샘플링 작업은 식품 안전 행정 법률 집행

담당자가 진행하거나 동행하여야 한다.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관계자는 사전에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이를 통지하면 안 된다.

제15조 샘플링 작업자가 현장 샘플링을 진행할 때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 추적 가능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샘플링 작업자는 식품 경영자의 경영 장소, 창고 및 식품 생산자의 완제품 창고 내 판매 대기 중인 제품에서 임의로 샘플을 추출할 수 있으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샘플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샘플링 수량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재검사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험 모니터링, 안전 검열, 사고 조사, 긴급 처리 중인 샘플링은 샘플링 수량, 샘플링 장소, 피샘플링 기관의 합법적인 자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중인 샘플은 검사 샘플과 재검사용 예비 샘플로 나뉜다.

현장 샘플링 시 샘플링 작업자가 개봉 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 샘플과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각각 봉인하고 샘플링 작업자와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여 확인한다.

샘플링 작업자는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샘플링 장소, 보관 환경, 샘플 정보 등을 사진 촬영 혹은 녹화하여 증거로 남겨야 한다.

제18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온라인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때 샘플 구매자 및 비용 지불 계좌, 등록 계좌, 샘플 수령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그림, 사진 혹은 녹화 등 방식으로 피샘플링 온라인 식품 생산 경영자 정보, 샘플 홈페이지 전시 정보 및 주문 정보, 지불 기록 등을 남겨야 한다.

샘플링 작업자가 샘플을 수령한 후 사진 혹은 녹화 등 방식으로 개봉 과정을 기록하고 배송 포장, 샘플 포장, 샘플 운송 조건 등을 확인하며 검사 샘플과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샘플링 작업자는 규범화된 샘플 문서를 사용하여 샘플링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한다.

현장 샘플링 시, 샘플링 작업자가 피샘플링 식품 경영자에게 법에 의거한 권

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안전 샘플링 문서에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하며 식품 안전 샘플링 작업을 거부 혹은 방해할 수 없다.

제20조 현장 샘플링 시 샘플, 샘플링 문서 및 관련 자료는 샘플링 작업자가 5일(근무일) 동안 휴대하거나 혹은 검사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가 임의로 샘플을 보내거나 문서를 발송할 수 없다. 객관적인 사유로 샘플링 송부 기한이 연장해야 할 경우, 샘플링 검사를 조직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수한 보관 및 운송 조건이 요구되는 샘플은 샘플링 작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가 관련 규정과 포장 표시 조건에 맞게 보관 및 운송해야 한다.

제21조 샘플링 작업자가 식품 생산 경영자의 불법 행위, 생산 경영한 식품 및 원료의 불법 출처를 발견하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 안전 샘플링을 거부하면 관할권을 가진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4장 검사와 결과 보고

제22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용 샘플은 검사 기관이 보관한다.

검사 기관은 샘플을 수령할 때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 파손 유무 및 기타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확인 및 기록하고 샘플과 샘플링 문서 정보를 대조하며 검사 샘플과 재검사용 예비 샘플에 각각 표시를 부착한 후 조건대로 보관한다.

샘플링 규격에 부적합한 샘플은 검사 기관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를 조직 혹은 실시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즉시 보고한다.

제23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에 식품 안전 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을 적용한다. 식품 안전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에서 제정한 임시 허용량, 임시 검사 방법 혹은 보충 검사 방법을 따른다.

위험 모니터링, 안전 검열, 사고 조사, 긴급 처리 등 업무 중 앞 조항에 규정된 검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타 검사 방법으로 식품 안전 문제의 원

인을 분석할 수 있다. 적용 방법은 기술 수단 선진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혹은 성(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는 검사 기관과 검사자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 검사 보고에 검사 기관의 날인, 검사자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한다. 검사 기구와 검사자는 발급된 식품 안전 검사 보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사 기관은 샘플 수령일로부터 20일(근무일) 이내에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와 검사 기구가 별도 약정한 경우, 약정을 따른다. 검사 기관은 샘플링 검사 업무를 조직 및 실시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동의 없이 검사 업무를 분담 혹은 도급할 수 없다.

제25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 기관이 검사 결론 작성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보관한다. 재검사용 예비 샘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면 검사 기관이 검사 결론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예비 샘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보관한다.

제26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결론 합격 시, 검사 기관이 검사 결론 작성 후 7일(근무일) 이내에 검사 결론을 샘플링 검사를 조직 혹은 위탁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송부한다.

샘플 검사 후 불합격의 경우, 검사 기관이 검사 결론 작성일로부터 2일(근무일) 이내에 검사 결론을 샘플링 검사를 조직 혹은 위탁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송부한다.

제27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한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불합격 시 검사 기관이 관련 요구 조건에 따라 보고하고 또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샘플링 지역 및 표시된 식품 생산자 주소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즉시 통보한다.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 혹은 실시한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샘플링 지역과 표시된 식품 생산자 주소지가 동일한 성(省)급 행정 구역이 아니면 샘플링 지역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불합격 검사 결론을 수령한 후 즉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표시된

식품 생산자 주소지의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통보한다. 동일한 성(省)급 행정 구역 내 불합격 검사 결론 통보는 샘플링 지역 성(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규정한 절차와 시한을 따른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샘플링한 경우 앞 두 조항 규정에 따른 통보 외에도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하여 주소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불합격 결론이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와 검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 혹은 통보한다.

안전 검열, 사고 조사, 긴급 처리 중 검사 결론의 통보와 보고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현(縣)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검사 불합격 결론을 수령한 후 즉시 성(省)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 규정에 따라 5일(근무일) 이내에 검사 보고와 샘플링 검사 결과 통지서를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 식품 집중 거래 시장 개설자,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송부하고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제5장 재검사와 이의

제30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본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샘플링 감독 검사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검사 결론 수령일로부터 7일(근무일) 이내에 샘플링 감독을 실시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 혹은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재검사 신청인 주소지 성(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을 불수리한다.

제3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검사하지 않는다.

- (1) 검사 결론이 미생물 지표 불합격인 경우
- (2) 재검사용 예비 샘플 유효 기간이 초과된 경우
- (3) 기한을 초과하여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 (4) 기타 원인으로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재검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5) 법률, 법규, 정관 및 식품 안전 표준에서 규정한 재검사 불가 상황인 경우

제32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재검사 신청 자료 수령 후 5일(근무일) 이내에 신청 수리 혹은 불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불수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급한 후 5일(근무일) 이내에 발표한 재검사 기관 목록 중 신속 효율 원칙에 따라 재검사 기관을 임의 확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1차 검사 기관은 재검사 기관이 될 수 없다. 객관적 사유로 즉시 재검사 기관을 확정할 수 없으면 업무일 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재검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재검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2일(근무일) 이내에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서면으로 이를 설명한다.

재검사 기관과 재검사 신청자가 일상 검사 위탁 등 이해 관계가 있으면 재검사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다.

제33조 1차 검사 기관은 재검사 기관 확정 후 3일(근무일) 이내에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재검사 기관에 전달한다. 객관적 사유로 시한 내에 전달할 수 없으면 재검사 접수를 수리한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동의 하에 3일(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검사 샘플 제공 방식은 1차 검사 기구와 신청인이 협상을 통해 정한다.

재검사 기관이 재검사용 예비 샘플을 수령한 후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샘플의 겉포장, 봉인지 등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재검사용 예비 샘플의 봉인지, 포장 파손 혹은 기타 결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검사 기관이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즉시 서면 보고한다.

제34조 재검사 기관이 재검사를 실시할 때 1차 검사 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재검사 시 식품 안전 표준에 검사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른다.

1차 검사 기관은 재검사 실시 과정 시찰을 위하여 재검사 기관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재검사 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1차 검사 기관은 재검사 작업을 방해할 수 없다.

제35조 재검사 기관은 예비 샘플 수령 후 10일(근무일) 이내에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결론을 제출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와 재검사 기관이 별도 약정하였다면 이를 따른다. 재검사 기관이 발급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으로 간주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재검사 결론을 수령하고 5일(근무일)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불합격 식품 생산 경영자 주소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재검사 신청자는 재검사 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한다. 재검사 결론과 1차 검사 결론이 일치하면 비용은 재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과 1차 검사 결론이 불일치할 경우 비용은 샘플링 검사를 감독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부담한다.

재검사 비용에는 검사 비용과 샘플 전달로 인하여 발생한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제37조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작업 중 식품 생산 경영자는 자신이 생산 경영한 식품의 샘플링 과정, 샘플의 진실성, 검사 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샘플링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신청자가 샘플링 완료 후 7일(근무일) 이내에 샘플링을 감독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샘플의 진실성, 검사 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신청자가 불합격 결론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근무일) 이내에 샘플링을 감독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시장 감독 관리 총국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청자 주소지 성(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이의 신청 자료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즉시 혹은 5일(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충해야 할 내용 전부를 1회 고지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신청 자료 수령일로부터 5일(근무일) 이내에 신청 수리 혹은 불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불수리 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제39조 이의 심사에 기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면 해당 시

장 감독 관리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샘플링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론을 고지한다. 샘플의 진실성, 검사 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한 이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접수 수리일로부터 업무일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관련 부처에 검사 및 판정 근거를 요청해야 할 경우, 소요 시간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이의 내용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의 신청 접수 처리 및 심사 결론을 불합격 식품 생산 경영자 소재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즉시 통보한다.

제6장 조사 처리 및 정보 공개

제40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샘플링 검사 불합격 결론을 받은 후 불합격 식품을 즉시 봉인하고 생산, 경영을 일시 중지하며 해당 생산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미 출시 판매한 불합격 식품을 리콜하는 등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하며 주소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처리 상황을 보고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조사 처리를 거부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검사와 이의 처리 기간에도 식품 생산 경영자는 앞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이행을 명령한다.

국가 이익, 공공 이익 수요로 인하여 혹은 중대 식품 안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성(省)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동의를 거쳐 성(省)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불합격 원인 조사 분석 혹은 재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41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省)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해당 영역 전문가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 및 분석 연구를 하고, 해당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식품 생산 경영자는 즉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안전 표준 부적합 혹은 인체 건강 유해 증거가 발견되면 식품 안전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을 즉시 중지하고 식품을 리콜함과 동시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이행을 명령하고 식품 생산 경영자의 법정 대표 혹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약정할 수 있다.

제42조 식품 경영자가 샘플링 검사 불합격 결론을 받은 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불합격 제품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샘플링 검사 불합격 결론을 받은 후 즉시 조사 작업을 시작하고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며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필요 시,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한 샘플링 검사 결과, 불합격 식품에 불법 첨가된 비식용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지거나 발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 약품 잔류물, 바이오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유해 물질 함유량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단계별로 보고한다.

제44조 조사 결과 기타 부처 책임으로 밝혀지면 해당 정보를 관련 업무 부처에 즉시 통보한다. 위탁 생산의 경우 식품 생산 수탁자 소재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사 처리함과 동시에 위탁자 식품 생산 경영자 소재지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90일 이내에 불합격 식품 조사 처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조사 처리를 진행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정부 웹사이트 등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샘플링 검사 결과와 불합격 식품 조사 처리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식품 생산 경영자 정보 파일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공개할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불합격 정보에는 피샘플링 식품 명칭, 규격, 상표, 생산 일자 혹은 로트 번호, 불합격 항목, 표시된 생산자 명칭, 주소 및 피샘플링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이 포함된다.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정보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정보 공개 전에 분석과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필요 시에는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 정부 혹은 상(上)급 시장 감독 관리 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라도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조직한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47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위험 모니터링, 조사 처리를 거부, 간섭, 방해하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안전법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처리를 이관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가 본 방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자료를 제공하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본 방법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해당 불합격 제품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하며 2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48조 식품 경영자가 본 방법 제40조,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감독 관리 부처의 명령 후에도 리콜하지 않거나 혹은 경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안전법 제1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9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경영자 행정 처벌 등 정보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게시 시스템에 등재하고 식품 생산 경영자의 이름을 사회에 공개한다. 심각하게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연합 처벌한다.

제50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 기관에 처리를 이관한다.

(1) 샘플 바꾸기, 검사 데이터 위조 혹은 허위 검사 보고를 발급한 경우

- (2) 샘플링 검사 작업을 통해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 (3) 규정을 위반하고 피샘플링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
- (4)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를 임의 공개한 경우
- (5) 규정 시한과 절차에 따라 불합격 검사 결론을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6)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전항 규정 제(1)호의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샘플링 검사 업무를 영구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 전항 규정 제(1)호 이외의 기타 상황에서는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5년 동안 샘플링 검사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재검사 기관이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업무를 거부하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경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업무를 1년 동안 2회 거부하게 되면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재검사 기구 자격을 박탈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51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 및 그 작업자가 법률, 법규 및 본 방법 규정과 관련 규율을 위반하면 식품 안전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사법 기관으로 처리가 이관된다.

제8장 부칙

제52조 본 방법에서 가리키는 감독 샘플링 검사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법적 절차와 식품 안전 표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을 제거하고자 식품을 샘플링, 검사, 재검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가리키는 위험 모니터링이란 시장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안전 표준이 없는 위험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분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본 방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성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성 샘플링 검사란 법적 절차와 식품 안전 표준 등 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하여 시장 식품의 전체적인 안전 상황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4조 식품 첨가제 검사에 본 방법 식품 검사 규정을 적용한다.

외식식품, 식용 농산품의 생산 경영 시작 단계의 샘플링 검사, 품질유지기한이 짧은 식품, 계절성 식품의 샘플링 검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본 방법 중 온라인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 규정을 참조하여 자동 판매기, 무인 마트 등 무인 운영 식품 경영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조직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 검사 기관이 작성한 온라인 검사 보고서와 발급한 서면 검사 보고서의 법적 효력을 동등하다.

제56조 본 방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